

## 비양육 부/모의 권리와 의무 Noncustodial Par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아동지원부(DCS)의 업무:

1. 아동양육비 명령서와 의료비용 지원 의무를 수립하고 집행함.
2. 아동양육비 명령서 변경 가능성을 검토함.
3. 워싱턴주 양육비등록부(Washington State Support Registry: WSSR)를 통해 아동양육비를 수령하고 기록하며 분배함.

### 비양육 부/모

귀하는 비양육 부/모입니다. 비양육 부/모란 미성년 자녀에게 반드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자녀의 친아버지, 법관이 판결한 입양 아버지, 친어머니, 혹은 법관이 판결한 입양 어머니를 말하며, 주법 및 연방법에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불

일반적으로 귀하는 자녀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DCS가 귀하에게 통지하여 자녀양육비 지불을 요구할 경우, 귀하가 WSSR, 부족법원이나 부족 아동지원기관, 혹은 다른 주 법원이나 아동지원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자녀양육비를 지불했을 경우에 DCS에서 귀하의 아동양육비 계좌에 그 금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동 양육 의무를 목적으로 사회보장국, 노동산업부, 혹은 보훈부와 같은 부양 수당 지원 기관으로부터 양육비가 지불되지 않은 한, 아동양육 명령서에 따라 상대방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불했을 경우에 DCS에서 귀하의 아동양육비 계좌에 그 금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주 혹은 부족의 아동지원기관이나 주 또는 부족 법원에서 자녀양육비를 그들에게 지불하라고 요청할 경우 즉시 DCS에 연락하십시오.
2. DCS에서 서면으로 귀하의 사례가 중단되었음을 알리기 전에는 아래에 명시된 WSSR 외에는 다른 곳으로 양육비를 보내지 마십시오.

모든 양육비 지불금은 Washington State Support Registry(WSSR) 앞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에서 공제함. 대부분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징수하거나 WSSR을 통해 지불을 하도록 DCS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명령서에 따라 DCS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경우 DCS는 급여에서의 자동으로 아동양육비를 징수해 해당 부/모에게 지불합니다.
2. 개인수표, 머니오더, 지불보증수표, 자기앞수표. 모든 수표와 머디오더는 아래 주소로 보내십시오.

WASHINGTON STATE SUPPORT REGISTRY  
PO BOX 45868  
OLYMPIA WA 98504-5868

3. 전자 이체송금(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EFT를 이용할 경우 매월 당좌예금구좌 혹은 저축계좌에서 해당 양육비를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800-468-7422로 전화하십시오.
4. 인터넷. 인터넷을 통한 지불방법은 매월 당좌예금구좌 혹은 저축계좌에서 해당 양육비를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CS의 웹사이트, <https://secureaccess.wa.gov>를 방문하십시오.
5. 크레딧 또는 현금인출카드. 상세 정보는 DCS의 웹사이트, <https://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creditdebit-card-payments>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은행구좌에 자금이 충분치 않아 은행에서 귀하가 발급한 개인수표를 부도처리하거나 EFT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양육비 지급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우편환, 지불보증수표, 자기앞수표 또는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는 방법으로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송금할 때 모든 수표나 머니오더 및 통신문에 반드시 귀하의 계좌번호, **IN** \_\_\_\_\_ 를(을) 기입해 보내십시오.

자녀양육비를 제공치 못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거나 DCS가 실수로 귀하를 이 과정에 연루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DCS로 연락하십시오.

DCS가 귀하의 의무 아동양육비의 징수를 중지한다는 것을 귀하에게 통지한 경우에, 귀하의 의무 아동양육비는 추후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DCS는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6개월 이상 구치소, 교도소, 또는 교정 시설 수감형을 받으면 아동 양육비 지급 명령 금액은 각 명령당 \$10로 일시 감액(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경감은 귀하, 양육권 부모, 또는 DCS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경감이 귀하의 소송 건에 적용된다면, 귀하는 양육비 경감 조건과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각 사람의 심의회 요청 권리를 설명한 통지서를 DCS로부터 받게 됩니다. 출소 후 네 번째 달부터는 양육비가 명령 받은 금액의 50%로 증가하고, 출소 후 1년이 지나면 원래 금액의 100%로 다시 돌아옵니다.

## 의료지원의무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자녀(들)의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면 DCS 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집행할 것입니다.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을 경우 DCS 에서 해당 금액을 수립하고 징수합니다.

1.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이름한 자녀(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DCS 에 알려주십시오.
2. 해당 자녀(들)를 위해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없고 아동양육비 명령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현금 의료지원 비용에는 귀하 몫의 비환불 대상의 의료비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양육 부/모가 자녀(들)를 위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거나 비환불 대상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경우 총괄 아동양육비 징수 서비스 신청과 더불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 부모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를 다하도록 DCS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DCS 는 귀하의 사례에 따라 그 의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양육 부/모로부터 WAC 388-14A-1020 에 명시된 환자부담비, 공제액, 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하는 비환불 대상의 의료비를 징수하도록 DCS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가 아동양육비 명령서에 따라 WAC 388-14A-1020 에 명시된 건강보험이나 본인 몫의 보험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거나 비환불 대상의 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을 경우 DCS 에 귀하의 명령서 수정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스스로 명령서 수정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유형

**협의회(Conference Board).** 협의회는 여러 분쟁들을 해결하고 정책을 설명하며 사실을 증명하는 DCS 행정상(법원이 아닌)의 절차입니다.

1. 협의회는 법원에서 제정한 아동양육비 사례와 법원이 제정하지 않은 아동양육비 사례 등을 검토합니다.
2. 협의회는 귀하와의 면담 없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전의 DCs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DCS 관리자와 함께 귀하의 사례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DCS 직원이 결정한 사항은 번복할 수 있으나 법에서 조치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판결 절차(심의회).** 심의회 역시 (법원이 아닌)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심의회는 협의회 보다는 더 형식을 갖춘 절차이지만 법원 조치보다는 덜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주법은 일부 상황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제공합니다. DCS에서 보내드린 통지서가 있으시면 그 통지서에 귀하의 심의회 유무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행정법 판사(An Administrative Law Judge, ALJ)가 주재합니다. 행정법 판사들은 DCS의 직원이 아닙니다.
2. 심의회 중에 행정법 판사는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고 귀하의 논쟁을 판결합니다. DCS에서 아동양육비 명령서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워싱턴 내에서 통지서를 받은 경우) 혹은 60일( 워싱턴주가 아닌 타주에서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내에 심의회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 a. 20일과 60일 한도 이후에도 심의회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CS에서 심의회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귀하의 양육비 명령서를 집행하게 됩니다. DCS는 심의회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징수된 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b. 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후에 심의회를 요청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늦게 심의회를 요청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늦게 하는 심의회 요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회 요청을 늦게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차후의 자녀양육비 지불의무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권리는 있습니다.
3. 행정법 판사의 판결문 사본을 우송해 드릴 것입니다. 행정법 판사 판결문에 귀하의 항소 권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4. DCS는 해당될 경우에 한해, 심의회를 요청 받으면 아동양육비 명령서 관련 양 부/모에게 연락하며, 양 부/모는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연락처:

DIVISION OF CHILD SUPPORT  
PO BOX 11520  
TACOMA WA 98411-5520

워싱턴 주 내 \_\_\_\_\_ 통화지역 \_\_\_\_\_

워싱턴 주 외 \_\_\_\_\_ 통화지역 \_\_\_\_\_

언어 또는 청각 장애인은 TTY/TDD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http://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 를 방문하십시오.

고용,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활동에 있어 아무도 인종, 피부색, 국적, 신념, 종교, 성별, 나이 또는 장애 여부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이 양식은 요청하실 경우 다른 형식(예: 점자)으로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